

1. 개정이유

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 기준·방법·절차·표시,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·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튜닝부품인증 신청서 및 인증서 서식을 정하고, 인용 조항 수정, 중복 조항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등 문구 수정(안 제1조, 안 제2조 및 안 제10조)

나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, 튜닝부품 인증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조항 삭제·수정(제3조 삭제, 안 제8조, 제12조 삭제, 별표1 삭제, 별표2 삭제,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)

다.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심의하는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튜닝부품인증 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로 변경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라. 법령에서 위임한 튜닝부품인증 신청서 및 인증서 서식을 정함(안 제7조, 별지 제3호서식 신설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의2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2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”을 “제34조의3, 제34조의4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튜닝용 부품”이란”을 ““튜닝부품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인증기관의 장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“제·개정, 유권해석, 인증서 유효기간, 시험기관 지정 및 이해당사자간 분쟁 등”을 “제·개정”으로, “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구기관, 시민단체 및 성능시험대행자”를 “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증기관”을 “성능시험대행자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규칙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”을 “규칙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”로, “인증기준”을 “인증대상별 인증기준”으로, “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,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

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“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”를 “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튜닝부품인증서”를 “별지 제4호서식의 튜닝부품인증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기준”을 “규칙 제56조의4 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규칙 제55조의2제4항”을 “규칙 제56조의9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2019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튜닝부품 인증 및 인증 변경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업체명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	
	주 소	본사 (전화 :) (팩스 :)			
		제조공장 (전화 :) (팩스 :)			
담당자	성 명		연락처		
	직 위		e-mail		
신청품목 (브랜드명)	적용차량	가능차종 대상범위	장치 구분	인증목적 및 용도	홈페이지 주소 (홈페이지가 있는 경우)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3 및 「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
[]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합니다.
[] 튜닝부품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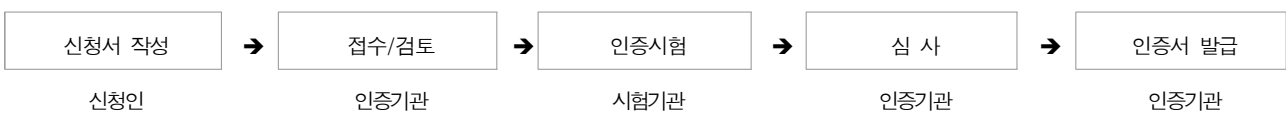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튜닝부품인증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신규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2.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.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외관도 4.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.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
	변경	1. 사업자 등록증 사본 2. 변경 전·후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. 변경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
처리절차



튜닝부품인증서

1. 관리번호 : 제 호
2. 제조업체명 :
3. 대표자성명 : (생년월일:)
4. 사업장 소재지 :
5. 인증부품명 :
6. 적용자동차 및 범위 :
7. 유효기간 :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3 및 「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인증시험결과, 본 부품은 자동차튜닝부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.

이
의
의

튜닝부품인증기관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2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2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	-----	----- 제34조의3, 제34조의4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-----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	-----	-----.
1. “튜닝용 부품”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구조·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.		1. “튜닝부품”이란	-----	-----.
가. ~ 다. (생략)	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2. ~ 4. (생략)		2. ~ 4. (현행과 같음)		
제3조 (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(이하 “규칙“이라 한다)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“이라 한다)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.		<삭 제>		

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
2.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시설·인력의 확보내역, 사업장의 위치 및 중·장기 사업계획
3. 튜닝부품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
4.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일

시정지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튜닝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한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기술위원회의 운영) ① 인증기관의 장은 튜닝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대상 선정, 인증기준 제·개정, 유권해석, 인증서 유효기간, 시험기관 지정 및 이해당사자간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학계, 연구기관, 시민단체 및 성능시험대행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6조(튜닝부품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) 규칙 제55조의2제3항에

제5조(기술위원회의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-----

----- 제·개정-----

-----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-----

-- 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 성능시험대행자-----
-----.

제6조(튜닝부품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) 규칙 제56조의2제2항에

따른 튜닝부품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7조(튜닝부품 인증절차) ① 튜닝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튜닝부품인증서를 발행하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8조(인증표시 및 방법 등) ① 제7조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

따라 -----
인증대상별 인증기준-----

-----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,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7조(튜닝부품 인증절차) ① -----

-----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---. 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별지 제4호서식의 튜닝부품인증서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인증표시 및 방법 등) ① -----

----- 규칙 제56조의4제

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 튜닝부품을 생산·판매할 수 있다. 1. 부품(포장재를 포함한다)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.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.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. 인증표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(생략) 제10조(튜닝부품인증 확인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<u>규칙 제55조의2제4항</u>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 ② ~ ⑥ (생략) 제16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9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	<u>1항</u>----- ----- --.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튜닝부품인증 확인 등) ① ----- <u>규칙 제56조의 9</u>----- ----- ----- 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7월 1일</u> -----
--	---

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 <u>6월 30일</u>----- ----- ----- ---
---	---